

**상호조정 기준** (제2조의3제6항 관련)

대 상	증원 기준
1. 상호조정을 희망하는 대학	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.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. 의·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의·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. 이 경우 감축되는 의·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제외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.
2. 의·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의·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	2. 의·치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의·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
3.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	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.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.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
4. 전문석사학위과정 및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전문대학	4.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